발 간 등 록 번 호
11-1170000-100059-10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6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6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일 러 두 기

1. 이 기준은 2017년에 법제처가 발간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추가가 필요한 사항과 그동안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2. 이 기준은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3. 정부에서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야 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 기준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기준에 수록된 입법례는 2025. 12.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했고, 기준에 맞는 입법례가 없는 경우에는 입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5. 그 밖에 법령의 입법절차 및 법령안의 작성 방법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제업무 편람』을 참고하시고, 법령의 용어·문장 등의 표현 부분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편 법령 입안의 기본 원칙 ——— 1

제1장 법령 입안의 의의 ····· 3

1. 법령의 본질과 법령 입안 ····· 3
2. 법령 입안과 입법 ····· 4
3. 법체계와 법령 형식 ····· 5
4. 법령 입안·심사 기준 ····· 7

제2장 입법의 필요성 판단과 입법 형식의 선택 ····· 8

1. 입법의 필요성 판단 ····· 8
2. 입법 형식의 선택 ····· 9
3.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 17
4.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방식 ····· 27
5. 집행명령 ····· 28

제3장 법령 입안과 관련한 헌법 원칙 ····· 29

1. 실체적 내용에 관한 헌법 원칙 ····· 29
2. 법령 형식에 관한 헌법 원칙 ····· 39

목 차

제2편 법령 입안 · 심사의 세부 기준 ——— 47

제1장 총칙 규정 ····· 49

1. 개관 ····· 49
2. 목적 규정 ····· 51
3.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 ····· 55
4. 정의 규정 ····· 57
5. 해석 규정 ····· 66
6. 국가 등의 책무 · 책임 등에 관한 규정 ····· 69
7.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 72
8.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 77

제2장 실체 규정 ····· 82

1. 기본계획 ····· 82
2. 인허가 제도 일반론 ····· 85
3. 허가 ····· 88
4. 특허 ····· 138
5. 인가 ····· 142
6. 등록 ····· 144
7. 신고 ····· 154
8. 지정 ····· 166
9. 인허가 등의 의제 ····· 173
10. 결격사유 ····· 183

11. 과징금 ····· 206
12. 부담금 ····· 219
13. 연체금과 가산금 ····· 229
14. 행정상 강제 ····· 236
15. 보조·출연·출자·융자 ····· 256
16.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 ····· 276
17. 조세법 규정 ····· 295
18. 재정·회계 제도 ····· 315
19. 기금 ····· 338
20. 자격 부여 ····· 353
21. 외국인의 지위 ····· 380
22. 검사 ····· 386
23. 위원회 ····· 398
24. 특수법인 ····· 428
25. 겸직과 영리업무의 금지 ····· 446
26. 행정지도 ····· 451
27. 공법상 계약 ····· 453
28. 지방자치제도 ····· 457

제3장 보칙 규정 ····· 467

1. 개관 ····· 467
2. 수수료 ····· 469
3. 출입검사와 질문 ····· 477

목 차

4. 보고의무 ····· 482
5. 청문 ····· 487
6. 권한의 위임·위탁 ····· 492
7. 직무대리(職務代理) ····· 511
8. 행정업무의 대행(代行) ····· 513
9. 개인정보의 처리 ····· 519
10. 공표 ····· 527
11. 행정쟁송 ····· 532
12. 손실보상(損失補償) ····· 545
13. 손해배상(損害賠償) ····· 551
14.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 560
15.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563

제4장 벌칙 규정 ····· 569

1. 개관 ····· 569
2. 벌칙의 규정 방식 ····· 570
3. 구성요건 ····· 576
4. 법정형 ····· 582
5. 과실범, 미수범, 공범, 형의 감면, 친고죄 등 ····· 589
6. 「형법」의 적용 제한 규정 ····· 598
7. 양벌 규정 ····· 599
8. 행정질서벌(과태료) ····· 604

제5장 부칙 규정 ····· 615

1. 개관 ····· 615
2. 시행일에 관한 규정 ····· 619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 629
4. 다른 법령을 폐지하는 규정 ····· 637
5.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 640
6. 적용례에 관한 규정 ····· 646
7. 특례에 관한 규정 ····· 657
8.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 663
9.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 719
10. 다른 법령과의 관계 ····· 723

제3편 법령의 체제와 개정·폐지 방식 ——— 729

제1장 법령의 체제 ····· 731

1. 법령의 제명 ····· 731
2. 제명·본칙·부칙과 장·절의 구분 ····· 733
3. 법령 조항과 별표·서식 ····· 734

제2장 법령의 개정 방식과 폐지 방식 ····· 742

1. 개정 방식의 유형과 기준 ····· 742
2. 일부개정 방식 ····· 743
3. 전부개정 방식 ····· 774

목 차

4.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개정문 작성 방식 ····· 776
5. 관련성 있는 법령을 함께 개정하는 방식 ····· 784
6. 공동부령의 개정 방식 ····· 790
7. 폐지 방식 ····· 792

제3장 법령 용어와 표현 ····· 794

1. 법령 용어의 통일적 사용 ····· 794
2. 약칭 사용 ····· 799
3. 준용(準用) ····· 803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세부목차

법령입안·심사기준

세부목차

제1편 법령 입안의 기본 원칙 1

제1장 법령 입안의 의의 3

1. 법령의 본질과 법령 입안 3

2. 법령 입안과 입법 4

3. 법체계와 법령 형식 5

4. 법령 입안·심사 기준 7

제2장 입법의 필요성 판단과 입법 형식의 선택 8

1. 입법의 필요성 판단 8

2. 입법 형식의 선택 9

가. 체계 정당성 원리와 입법의 형식 10

1) 체계 정당성 원리의 의의 10

2) 법령의 제정·개정의 선택과 특별법 문제 10

3) 법령 통폐합과 분법(分法)의 문제 12

가) 법령 통폐합의 필요성 12

나) 법령 통폐합의 기준 12

① 유사한 분야나 유사한 내용을 여러 법령으로 나누어 규정한 경우 12

②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통합 대상 법령의 조문 수가 적은 경우 13

③ 같은 대상자에 대해 내용별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13

④ 같거나 유사한 분야임에도 세부 내용을 별도 법령으로 정한 경우 13

⑤ 하나의 법률에 다수의 하위법령을 둔 경우 13

다) 분법의 필요성과 기준 ····· 14
나. 법령 형식과 규정 내용 ····· 15
3.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 17
가. 개관 ····· 17
나. 위임 시 법령 형식별 소관 사항 ····· 18
다. 위임 대상 법령별 규정 방식 ····· 19
1) 일반적인 규정 방식 ····· 19
2)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 ····· 20
3)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경우 ····· 22
4) 정관 등 조직의 자치 규정에 위임하는 경우 ····· 24
라.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 규정 방식 ····· 24
1)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의 입법 한계 ····· 24
2) 위임 범위 판단기준 ····· 25
3) 하위법령의 절차 및 방식 ····· 26
4) 하위법령 입법 부작위 ····· 26
5) 입안·심사 시 유의 사항 ····· 26
4.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방식 ····· 27
5. 집행명령 ····· 28

제3장 법령 입안과 관련한 헌법 원칙 ····· 29

1. 실체적 내용에 관한 헌법 원칙 ····· 29

세부목차

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29

1) 의의와 내용 ····· 29

2) 법령 입안・심사 시 고려 사항 ····· 31

나. 평등의 원칙 ····· 31

1) 의의와 내용 ····· 31

2) 법령 입안・심사 시 고려 사항 ····· 32

3) 남녀 평등(성인지적 관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평등의 원칙 ··· 33

다. 신뢰보호의 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35

1) 의의와 내용 ····· 35

2) 법령 입안・심사 시 고려 사항 ····· 36

라. 적법절차의 원칙 ····· 37

1) 의의와 내용 ····· 37

2) 법령 입안・심사 시 고려 사항 ····· 38

마. 과소보장 금지의 원칙 ····· 38

1) 의의 ····· 38

2) 법령 입안・심사 시 유의 사항 ····· 39

2. 법령 형식에 관한 헌법 원칙 ····· 39

가. 명확성의 원칙 ····· 39

1) 의의와 내용 ····· 39

2) 법령 입안・심사 시 고려 사항 ····· 40

가) 명확성의 정도 ····· 40

나) 불확정 개념의 사용 ····· 40

다) 행정기관 재량권과의 관계 ····· 41
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 41
1) 의의와 내용 ····· 41
2) 구체성과 명확성 요구의 정도 ····· 42
3) 법령 입안·심사 시 고려 사항 ····· 43
다. 의회유보의 원칙 ····· 44
라. 죄형법정주의 ····· 44
1) 의의와 내용 ····· 44
2) 법령 입안·심사 시 고려 사항 ····· 45
마. 조세법률주의 ····· 46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 **47**

제1장 총칙 규정 ····· **49**

1. 개관 ····· **49**
가. 의의 ····· 49
나. 규정의 위치 ····· 50
다. 규정의 내용과 순서 ····· 50
2. 목적 규정 ····· **51**
가. 의의 ····· 51
나. 규정의 위치 ····· 52
다. 규정의 제목 ····· 52

세부목차

라. 규정의 표현 방식 ····· 52

1) 수단을 나열한 후 목적을 규정하는 방식 ····· 53

2) 목적을 명시한 후 수단을 규정하는 방식 ····· 53

3) 직접 목적만 규정하는 방식 ····· 54

마. 목적 규정에서의 약칭 사용 ····· 54

바. 하위법령의 목적 규정 ····· 54

3.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 ····· 55

가. 의의 ····· 55

나. 규정의 위치와 제목 ····· 56

다. 규정의 표현 방식 ····· 56

4. 정의 규정 ····· 57

가. 의의 ····· 57

나. 규정의 위치 ····· 58

다. 규정의 제목 ····· 59

라. 규정의 표현 방식 ····· 59

1) 정의하는 용어가 하나인 경우의 표현 방식 ····· 59

2) 정의하는 용어가 둘 이상인 경우의 표현 방식 ····· 60

3) 정의 규정을 총칙 규정 부분 외에 둔 경우의 표현 방식 ····· 62

4) 특정 용어를 괄호를 사용하여 정의한 경우의 표현 방식 ····· 62

5) 총칙 규정이 아닌 별도의 장에 정의 규정을 둔 경우의 표현 방식 ····· 63

6) 용어 정의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 ····· 63

마. 정의 규정과 약칭 ····· 64

1) 정의 규정과 약칭의 구분 ····· 64
2) 정의된 용어의 약칭 ····· 64
바. 하위법령에서의 정의 규정 ····· 65
5. 해석 규정 ····· 66
가. 의의 ····· 66
나. 규정의 위치 ····· 67
다. 규정의 제목 ····· 68
라. 규정의 표현 방식 ····· 68
6. 국가 등의 책무 · 책임 등에 관한 규정 ····· 69
가. 의의 ····· 69
나. 규정의 위치 ····· 69
다. 규정의 제목 ····· 69
라. 규정의 표현 방식 ····· 70
7.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 72
가. 의의 ····· 72
나. 규정의 위치 ····· 72
1) 총칙에 두는 경우 ····· 72
2) 특정한 조항의 적용 범위를 한정한 경우 ····· 73
다. 규정의 제목 ····· 74
라. 규정의 표현 방식 ····· 74
1) 법령의 적용 대상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식 ····· 74

세부목차

2) 법령의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방식 ····· 75

3) 법령의 적용 대상과 적용 제외 대상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방식 ····· 75

4) 적용 범위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 ····· 76

8.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 77

가. 의의 ····· 77

나. 규정의 위치 ····· 77

다. 규정의 제목 ····· 77

라. 규정의 표현 방식 ····· 78

1)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 78

2) 그 법령을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 79

3)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 79

4)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시 그 법령의 목적이나 이념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식 ····· 80

마.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의 구분 ····· 80

제2장 실체 규정 ····· 82

1. 기본계획 ····· 82

가. 기본계획의 의의 ····· 82

나. 기본계획 입안 시 유의 사항 ····· 84

2. 인허가 제도 일반론 ····· 85

가. 인허가 제도의 의의 ····· 85
나. 규제 완화와 인허가의 관계 ····· 86
다.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 ····· 86
라. 자동적 처분 ····· 87
3. 허가 ····· 88
가. 허가 제도의 개요 ····· 88
1) 허가의 의의 ····· 88
2) 영업허가와 특허의 차이점 ····· 90
나. 허가의 규정 형식 ····· 90
다. 조건부허가와 예비허가(내인가) ····· 91
라. 허가기준 ····· 94
마. 허가신청의 절차 ····· 98
바. 허가증의 발급 ····· 100
사. 허가의 유효기간 ····· 101
1) 허가의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 ····· 101
2) 유효기간 만료의 사전 통지 ····· 103
3) 허가기준의 정기 신고 ····· 104
아. 부관(附款) ····· 104
자. 허가 사항의 변경 ····· 106
차. 휴업・폐업 절차 ····· 110
카.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111

세부목차

1) 영업자 지위 승계의 의의 ····· 111
2) 영업자 지위의 승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 ····· 112
타.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 117
1) 행정처분의 근거 ····· 117
2) 행정처분 규정 방식 ····· 118
3) 행정처분의 기준 ····· 119
가) 일반기준 ····· 119
나) 개별 분사무소별 영업정지에 관한 기준 ····· 120
다) 폐업 시 허가 취소에 관한 기준 ····· 121
4) 하위법령에서의 행정처분 기준 ····· 124
가) 일반기준 ····· 125
①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처분기준 ····· 125
② 일반기준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 ····· 126
③ 일반기준 3: 처분의 가중·감경에 관한 사항 ····· 129
나) 개별기준 ····· 132
5) 행정처분 절차 ····· 132
6) 제척기간 ····· 134
7)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135
파. 무허가 영업에 대한 벌칙 ····· 138
4. 특허 ····· 138
가. 특허의 의의 ····· 138
나. 개인의 자격에 대한 면허와의 구별 ····· 139

다. 특허 제도 입안 시 유의 사항 ····· 140

5. 인가 ····· 142

가. 인가의 의의 ····· 142

나. 인가 제도 입안 시 유의 사항 ····· 143

6. 등록 ····· 144

가. 등록의 의의 ····· 144

나. 등록의 규정 형식 ····· 145

다. 등록기준 ····· 146

라. 등록 조건 ····· 149

마. 등록의 유효기간 ····· 149

바. 등록 사항의 변경 ····· 150

사. 등록증의 발급 ····· 151

아. 등록을 한 자의 지위 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152

자. 등록취소(말소), 영업정지 등 ····· 152

7. 신고 ····· 154

가. 신고 제도의 의의 ····· 154

1)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 ····· 154

2)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현행 법률의 정비 ····· 156

3) 신고 제도 입안 시 유의 사항 ····· 157

나. 신고의 규정 형식 ····· 158

다. 신고 요건과 신고 조건 ····· 160

세부목차

라. 신고증명서의 발급 ····· 160

마. 신고의 유효기간 ····· 161

바. 신고사항의 변경 ····· 162

사.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와 신고효력 상실 ····· 162

아.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 165

8. 지정 ····· 166

가. 지정 제도의 의의 ····· 166

나. 기존 인허가나 특허로서의 지정 ····· 166

다.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 ····· 168

라. 지원·육성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는 지정 ····· 171

마. 규제 대상의 특정을 위한 지정 ····· 172

9. 인허가 등의 의제 ····· 173

가. 인허가 의제의 의의 ····· 173

나. 인허가 의제의 규정 방식 ····· 174

1) 인허가 의제의 조 제목 ····· 175

2) 법률에 인허가 의제 대상 명시 ····· 175

3) 의제되는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 규정 ····· 176

다. 그 밖의 인허가 의제 관련 규정 ····· 177

1) 주된 인허가 시 통보 의무 ····· 177

2)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에 관한 규정 ····· 178

3) 인허가 의제 후 사후 관리 규정 ····· 179

4) 실무협의회 구성, 협의 간주 등 도입 ····· 182

10. 결격사유 ····· 183

가. 결격사유의 의의 ····· 183

나. 결격사유와 기본권과의 관계 ····· 184

다. 결격사유의 일반적 규정 방식 ····· 184

1) 법률에서 규정할 것(「행정기본법」 제16조제1항) ····· 184

2)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행정기본법」 제16조제2항제1호) ····· 185

3)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행정기본법」 제16조제2항제2호) ···· 185

4)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행정기본법」 제16조제2항제3호) ····· 185

5)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행정기본법」 제16조제2항제4호) ··· 186

라. 결격사유의 표현 방식 ····· 186

1) 자격이나 신분을 부여하는 경우의 결격사유 ····· 186

2) 인허가 등의 요건으로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방식 ····· 187

마. 결격사유의 유형과 그 규정 방식 ····· 188

1) 결격사유의 유형 ····· 188

2) 제한능력자 ····· 189

① 미성년자 ····· 189

②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189

③ 정신장애 관련 사유 등 ····· 191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192

4)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94

세부목차

5)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199

6) 인허가가 취소된 자(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0

7)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202

8) 그 밖의 결격사유 ····· 203

바. 결격사유와 인허가 취소와의 관계 ····· 204

11. 과징금 ····· 206

가. 과징금의 의의 ····· 206

나. 과징금의 유형 ····· 206

1)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 206

2)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 207

3)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 ····· 207

다. 과징금 제도 도입 시 유의 사항 ····· 208

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도입 기준 ····· 209

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규정 방식 ····· 210

1)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 ····· 210

2) 과징금의 부과 기준 ····· 211

3) 영업정지기간과 매출금액 등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 ····· 213

4) 과징금의 부과 ····· 215

5) 납부기한의 연기와 과징금의 분할 납부 ····· 216

6) 과징금의 징수 ····· 216

7) 과징금 미납과 가산금 ····· 217

8) 과징금의 귀속과 강제징수 ····· 217

9) 과징금의 용도 ····· 218

12. 부담금 ····· 219

가. 의의 ····· 219

나. 유사 금전납부의무와의 구분 ····· 219

1) 부담금과 조세(목적세) ····· 219

2) 부담금과 사용료・수수료 ····· 220

3) 부담금과 사회보험료 ····· 220

4) 부담금과 과태료 ····· 220

5) 용어의 정비 ····· 220

다. 부담금의 유형 ····· 221

1) 인적 공용부담으로서의 부담금 ····· 221

가) 수익자부담금 ····· 221

나) 원인자부담금 ····· 222

2)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부담금(유도적 부담금) ····· 222

라. 부담금 제도 도입의 원칙 ····· 223

마. 부담금의 규정 방식 ····· 224

1) 부과 요건의 법정화 ····· 224

2) 이중부과의 금지 ····· 225

3)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 225

4) 부과절차 ····· 226

5) 강제징수 절차와 가산금 ····· 226

6) 구제수단 ····· 227

세부목차

7)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 228

13. 연체금과 가산금 ····· 229

가. 의의 ····· 229

나. 연체금과 가산금의 구분 ····· 230

다. 연체금에 관한 일반 규정 ····· 231

1) 민사관계법상의 관련 규정 ····· 231

2) 재정 관련 법령상의 연체금 관련 규정 ····· 232

라. 연체금과 가산금의 규정 방식 ····· 232

1) 용어의 통일 ····· 232

2) 부과 근거의 법정화 ····· 232

3) 연체금과 가산금의 산정기준 ····· 234

4) 중가산금 ····· 235

14. 행정상 강제 ····· 236

가. 개관 ····· 236

나. 행정대집행 ····· 237

1) 의의 ····· 237

2) 행정대집행 근거에 관한 규정 방식 ····· 237

3) 행정대집행의 비용징수에 관한 규정 방식 ····· 238

4) 행정대집행 권한위탁에 관한 규정 방식 ····· 239

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 240

1) 의의 ····· 240

2) 이행강제금의 도입 기준 ····· 241

3) 이행강제금의 규정 방식 ····· 242
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법률의 규정사항 ····· 242
나)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 243
다) 이행강제금 부과 주기 ····· 245
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 246
마) 불복절차 ····· 247
바) 강제징수 절차 ····· 247
라. 직접강제 ····· 248
1) 의의 ····· 248
2) 직접강제의 도입 기준 ····· 248
3) 규정 방식 ····· 249
가) 직접강제의 발동 요건 ····· 249
나) 직접강제의 절차 ····· 249
마. 강제징수 ····· 251
1) 의의 ····· 251
2) 행정상 강제징수의 규정 방식 ····· 251
바. 즉시강제 ····· 253
1) 의의 ····· 253
2) 즉시강제의 도입 기준 ····· 253
3) 규정 방식 ····· 254
가) 즉시강제의 발동 요건 ····· 254
나) 즉시강제의 절차 ····· 254

세부목차

15. 보조 · 출연 · 출자 · 융자 ····· 256

가. 보조금 ····· 257

1) 의의 ····· 257

2) 보조금의 근거 ····· 258

3) 보조금의 규정 형식 ····· 259

4) 보조금의 지급 주체 ····· 260

5) 보조금의 상대방과 대상 사업 ····· 261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 ····· 262

가) 보조금의 지급 대상의 특례 ····· 263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특례 ····· 263

다) 보조금의 전용에 관한 특례 ····· 264

라) 그 밖의 특례 규정 ····· 264

나. 출연 ····· 266

1) 의의 ····· 266

2) 출연의 근거 ····· 266

3) 보조금과의 차이 ····· 267

4) 출연의 규정 형식 ····· 268

다. 출자 ····· 269

1) 의의 ····· 269

2) 출자의 근거 ····· 270

3) 출자 이후의 관리 ····· 270

4) 출자의 규정 형식 ····· 271
5) 현물출자에 관한 문제 ····· 272
라. 융자 ····· 273
1) 의의 ····· 273
2) 융자의 근거 ····· 273
3) 융자의 규정 형식 ····· 275
16.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 ····· 276
가. 국공유재산 관리 법령 체계 ····· 276
나. 국공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한 ····· 276
다. 국공유재산의 분류·관리 원칙 ····· 277
1) 국공유재산의 분류 ····· 277
2) 국공유재산의 관리기관 ····· 278
3)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 279
라. 행정재산의 관리·처분 ····· 280
1) 행정재산의 취득 ····· 280
가) 법령에 따른 취득 ····· 280
나) 기부채납 ····· 281
2) 행정재산의 사용 ····· 281
가)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포괄적인 예외 ····· 282
나) 사용허가의 구체적인 사항별 특례 인정 ····· 285
① 사용허가의 범위에 관한 특례 ····· 285
② 사용료 감면에 관한 특례 ····· 285

세부목차

③ 사용허가의 기간에 관한 특례 ····· 286

3) 처분(소유권 이전) 제한 ····· 287

마.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 288

1) 관리・처분 개요 ····· 288

2) 관리・처분 계약 ····· 289

3) 관리・처분의 유형 ····· 289

가) 일반재산의 대부 ····· 289

나) 일반재산의 매각 ····· 291

다) 일반재산의 교환・양여 및 개발 ····· 291

① 교환과 양여 ····· 291

② 개발 ····· 293

4) 현물출자 ····· 293

5) 처분 제한 ····· 295

17. 조세법 규정 ····· 295

가. 조세법의 기본원리 ····· 295

1) 조세의 의의 및 조세법령의 일반원칙 ····· 295

2) 조세법률주의 원칙 ····· 296

가) 과세요건 법정주의 ····· 296

나) 과세요건 명확주의 ····· 297

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298

① 소급과세금지의 의의 ····· 298

② 진정・부진정 소급효 ····· 299

③ 절차적 규정에 대한 적용 여부 ····· 300
3) 조세평등주의 원칙 ····· 301
가) 조세평등주의와 응능과세(應能課稅)의 원칙 ····· 301
나) 조세우대 조치 ····· 302
다) 공제제도 ····· 302
4) 위임입법 관련 원칙 ····· 302
나. 조세법 체계 ····· 303
1) 국세의 체계 ····· 303
2) 지방세의 체계 ····· 306
다. 조세감면 규정 ····· 308
1) 조세감면의 의의 ····· 308
2) 조세감면의 법적 체계 ····· 310
가) 조세특례 제한 ····· 310
나) 조세감면과 조세법률주의 ····· 310
다)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의 방법 ····· 311
라) 세법 외의 법률에 두는 조세감면 규정 ····· 313
라. 조례로 지방세를 규정하는 경우 ····· 314
18. 재정·회계 제도 ····· 315
가. 재정의 의의 ····· 315
나. 재정에 관한 법체계 ····· 316
다. 재정·회계 제도 ····· 317
1) 일반회계의 원칙 ····· 317

세부목차

2) 특별회계 제도 ····· 317

3) 기금 ····· 318

4) 자금 ····· 318

라. 재정・회계의 처리기관 ····· 319

1)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 319

2)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독립기관 ····· 320

마. 일반회계에 대한 특례 규정 ····· 320

1) 예산총계주의원칙과 그 예외 ····· 320

2) 예산안편성지침에 대한 특례 ····· 322

3) 세출예산의 전용과 이월 ····· 323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특례 ····· 325

바. 특별회계법의 입법 형식과 내용 ····· 326

1) 총칙 ····· 327

가) 목적・설치 규정 ····· 327

나) 특별회계의 관리 주체 ····· 328

다) 계정의 구분 ····· 328

2) 세입・세출 규정 ····· 329

가) 일반적인 사항 ····· 329

나)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 ····· 329

다) 차입금 ····· 330

라) 준비금의 설치 및 예비비의 계상 ····· 331

① 준비금 또는 적립금 ····· 331
② 예비비 ····· 332
마) 예산 편성상의 특례 ····· 332
3) 결산 관련 규정 ····· 333
가) 예산의 이월 등 ····· 333
나) 잉여금 ····· 334
4) 사무위탁과 감독 ····· 335
5) 유효기간 등 ····· 336
사. 공공기관 등의 재정회계 ····· 336
1) 공공기관의 재정회계 원칙 ····· 336
2) 자본금 ····· 337
3) 손익금의 처리 ····· 337
19. 기금 ····· 338
가. 기금의 의의와 법적 근거 ····· 338
1) 기금의 의의 ····· 338
2) 기금 설치·운용의 근거법 ····· 339
나. 개별 기금 법제의 입법 형식과 내용 ····· 340
1) 기금법의 입법 형식 ····· 341
2) 기금 설치 규정 ····· 341
3) 기금의 재원과 용도 ····· 344
가) 기금의 재원 조성 ····· 344
나) 기금의 용도 ····· 345

세부목차

① 기금 사용의 유형 ····· 345
② 예산의 이월과 예산목적 외 사용 ····· 345
다) 기금의 관리・운용 ····· 345
① 기금 관리・운용 업무 ····· 345
②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절차 규정 ····· 347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 347
④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방법 ····· 348
라) 기금의 회계 및 결산 ····· 350
① 기금의 회계연도 ····· 350
② 회계방식 ····· 350
③ 기금의 회계기관 ····· 350
④ 기금의 계정 설정 ····· 351
⑤ 기금의 구분 경리 ····· 352
⑥ 이익과 결손의 처리 ····· 352
20. 자격 부여 ····· 353
가. 개관 ····· 353
1) 자격 제도의 유형 ····· 353
2) 자격 제도의 도입 기준 ····· 354
3) 「자격기본법」 등과의 관계 ····· 354
4) 일반적인 규정 사항 ····· 355
나. 자격의 명칭 ····· 355
다. 자격자의 업무에 관한 규정 ····· 356

라. 무자격자의 자격업무 종사와 명칭 사용 제한 ····· 357
1) 무자격자의 자격업무 종사 제한 ····· 357
2) 자격 명칭 사용의 제한 ····· 358
마. 자격 부여 형식에 관한 규정 ····· 359
바. 자격자 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 ····· 362
1) 일반적인 규정 ····· 362
2) 시험의 면제 ····· 366
3) 외국인의 응시 자격과 외국 자격의 인정 ····· 367
사. 결격사유 ····· 369
아. 자격업무 개시에 관한 규정 ····· 371
자. 자격자의 의무 ····· 373
차. 자격취소와 그 밖의 처분 ····· 374
1) 자격취소・업무정지 등 ····· 375
2) 자격자에 대한 징계 ····· 377
카. 자격자 단체에 관한 규정 ····· 378
21. 외국인의 지위 ····· 380
가. 개관 ····· 380
나. 외국인의 권리 등의 인정 방법과 범위에 따른 분류 ····· 381
1)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 인정 ····· 381
2) 상호주의 규정 ····· 381
3) 외국인의 권리 등을 부인하는 규정 ····· 382
4) 외국인의 권리 등을 인정하되 일정한 제한을 두는 규정 ····· 384

세부목차

다. 그 밖의 관련 사항 ····· 385

22. 검사 ····· 386

가. 개관 ····· 386

나. 검사의 주체 ····· 386

1) 행정기관이 직접 검사하거나 기관을 지정해서 검사하게 하는 경우 ····· 386

2) 자체적으로 검사하게 하는 경우 ····· 387

다. 검사의 종류 및 주기 ····· 388

라. 검사기관 지정·위탁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 389

마. 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제재 규정 ····· 390

바. 검사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규정 ····· 391

사. 검사와 유사한 제도(인증, 검정, 인정) ····· 393

1) 인증(認證) ····· 393

가) 개관 ····· 393

나) 인증의 유형 및 효과 ····· 393

다) 인증 관련 법령 규정 ····· 394

2) 검정(檢定) ····· 396

3) 인정(認定) ····· 398

23. 위원회 ····· 398

가. 위원회의 의의와 종류 ····· 398

나. 위원회의 성격에 따른 입법 방식 ····· 400

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 ····· 403

라. 위원회의 규정 방식 ····· 404
1) 위원회의 설치 ····· 404
가)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 ····· 404
나)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 408
2) 위원회의 구성 ····· 409
가) 위원회 구성의 기본 원칙 ····· 409
나) 위원회의 구성 규정 ····· 410
다) 위원의 임기와 신분 규정 ····· 413
라) 위원장 ····· 418
마) 위원회의 존속기한 ····· 419
3) 위원회의 운영 ····· 419
가) 출석 회의의 원칙 ····· 419
나) 회의의 소집권자에 관한 규정 ····· 420
다) 정족수에 관한 규정 ····· 421
라) 분과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 421
마) 위원회의 간사 또는 사무기구 ····· 423
바)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424
사) 그 밖의 규정 ····· 425
4) 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 ····· 426
24. 특수법인 ····· 428
가. 개관 ····· 428
나. 특수법인의 설립 ····· 431

세부목차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 ····· 431
가) 법률로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 ····· 431
나) 법률에 설립 근거 규정만 두고 설립 자체는 자유의사에 맡기는 방식 ··· 431
2) 법인격의 부여 ····· 433
3) 등기사항 규정 방식 ····· 435
4) 법인의 정관 기재 사항 ····· 437
다. 특수법인의 사업 ····· 437
라. 특수법인의 이사회와 임직원에 관한 규정 ····· 440
1) 이사회에 관한 규정 ····· 440
2) 대표자 등 임원 규정 ····· 441
3) 대표권 제한 규정 ····· 442
4) 대리인 규정 ····· 443
마. 재원 등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 443
바. 특수법인에 대한 감독 ····· 445
25. 겸직과 영리업무의 금지 ····· 446
가. 개관 ····· 446
나.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 규정 ····· 447
1) 공무원의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 규정 ····· 447
2) 공공단체 임직원의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 규정 ····· 448
3) 공적 조합・특수법인의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 규정 ····· 448
4)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의 임직원, 특정 자격자 등에 대한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 규정 ····· 449

26. 행정지도 ····· 451
가. 개관 ····· 451
나. 행정지도의 규정 내용 ····· 452
27. 공법상 계약 ····· 453
가. 의의 및 종류 ····· 453
나. 법적 규율 ····· 455
다. 규정 시 유의 사항 ····· 455
28. 지방자치제도 ····· 457
가. 의의 ····· 457
나. 입안 시 유의사항 ····· 457
1) 자치입법권의 보장 ····· 457
가) 법령상 규율 완화 및 조례 위임 확대 ····· 457
나) 조례 위임 시 유의사항 ····· 459
다) 법령상 규제 기준의 완화 또는 강화 ····· 461
라) 하위법령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금지 ····· 462
2) 사무수행의 독립성・자율성 실질적 보장 ····· 464

제3장 보칙 규정 ····· 467

1. 개관 ····· 467
가. 보칙 규정의 의의 ····· 467
나. 규정 시 유의 사항 ····· 467
2. 수수료 ····· 469

세부목차

가. 의의 ····· 469

나. 부과・징수의 근거 ····· 469

1)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 ····· 469

2)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 ····· 470

3) 수수료의 감면 ····· 470

다. 수수료에 관한 규정 방식 ····· 471

1) 제목을 규정하는 경우 ····· 471

2) 수수료의 근거 규정에 관한 입법례 ····· 471

3)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의 입법례 ····· 472

4) 수수료의 금액 ····· 472

5) 수수료의 납부 방법 ····· 474

6) 수수료의 귀속 ····· 475

7) 수수료의 강제징수 ····· 475

8) 수수료 반환 규정 ····· 476

3. 출입검사와 질문 ····· 477

가. 출입검사・질문 규정의 의의 ····· 477

나. 「행정조사기본법」과의 관계 ····· 477

다. 출입검사・질문의 근거 ····· 478

라. 출입검사・질문의 범위 ····· 479

마. 출입검사・질문과 영장주의에 관한 문제 ····· 480

바. 검사를 위해 물품을 수거하는 경우의 보상 문제 ····· 480

사. 출입검사・질문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 480

4. 보고의무 ····· **482**
가. 의의 ····· 482
나. 「행정조사기본법」과의 관계 ····· 482
다. 보고의무의 규정 방식 ····· 482
라. 보고의무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 486
5. 청문 ····· **487**
가. 의의 ····· 487
나. 개별법상 청문 규정과 「행정절차법」상 청문과의 관계 ····· 487
다. 청문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경우 ····· 488
라. 청문 규정의 위치 ····· 489
마. 행정처분의 위임 시 청문 권한의 위임 ····· 490
6. 권한의 위임 · 위탁 ····· **492**
가. 의의 ····· 492
나. 위임 · 위탁의 근거 ····· 492
다. 권한 위임 · 위탁의 규정 방식 ····· 494
1) 권한위임 규정의 표현 방식 ····· 494
2) 민간위탁의 규정 방식 ····· 497
가)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한계 ····· 497
나) 민간위탁의 규정 방식 ····· 498
라. 하위법령에서 소관 기관을 표기하는 방식 ····· 502
마. 재위임 · 위탁의 규정 방식 ····· 503

세부목차

바. 그 밖의 위임・위탁 규정 관련 유의 사항 ····· 505

7. 직무대리(職務代理) ····· 511

가. 의의 ····· 511

나. 유사 개념과의 구별 ····· 511

다. 대리의 규정 ····· 512

1) 직무대리 명칭 사용 ····· 512

2) 직무대리의 규정 방식 ····· 512

8. 행정업무의 대행(代行) ····· 513

가. 의의 ····· 513

나. 유사 개념과의 구별 ····· 513

다. 대행의 기능 ····· 514

라. 대행 제도의 도입 ····· 515

마. 대행의 규정 방식 ····· 516

1) 대행자에 대한 지휘・감독 ····· 517

2) 대행비용의 징수 등 ····· 517

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518

9. 개인정보의 처리 ····· 519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519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520

다. 개인정보의 제공 ····· 521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523

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523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의 규정 방식 ····· 524
10. 공표 ····· 527
가. 의의 및 필요성 ····· 527
나. 성질 ····· 527
다. 규정 방식 ····· 530
11. 행정쟁송 ····· 532
가. 개관 ····· 532
나. 행정소송 ····· 533
1) 개별법상 「행정소송법」에 대한 특례 규정의 필요성 ····· 533
2) 「행정소송법」에 대한 특례의 규정 방식 ····· 533
가)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 533
나)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등 ····· 534
다) 행정소송의 피고 명시 ····· 535
라) 행정소송 심리절차의 특례 인정 ····· 535
마) 특수한 소송의 인정 ····· 536
3) 행정심판과의 관계 설정 ····· 537
다. 행정심판 ····· 538
1) 개별법상 「행정심판법」에 관한 특례 규정의 필요성 ····· 538
2)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의 규정 방식 ····· 539
가) 「행정심판법」에 갈음하는 특별절차를 규정하는 방식 ····· 539
나) 「행정심판법」 상 일부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방식 ····· 541

세부목차

① 행정청이 아닌 자의 처분에 대한 심판기관의 규정 방식 ····· 542

② 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방식 ····· 542

③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청구이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방식 ····· 542

3) 이의신청 등 간이 행정쟁송절차 ····· 544

12. 손실보상(損失補償) ····· 545

가. 손실보상의 의의 ····· 545

나.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 545

다. 손실보상의 규정 방식 ····· 547

라. 손실보상의 기준 ····· 548

마. 손실보상의 절차 ····· 548

바. 당사자와의 협의 ····· 550

13. 손해배상(損害賠償) ····· 551

가. 손해배상의 의의 ····· 551

나. 개별법상 손해배상 요건 규정 방식 ····· 551

1) 무과실책임 ····· 552

2) 귀책사유 증명책임의 전환 ····· 553

3) 과실의 추정 ····· 553

다. 손해배상 책임자 ····· 554

라.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 555

마. 손해배상 관련 특칙 ····· 556

바. 징벌적 손해배상 ····· 557

14.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 560
가. 의의 ····· 560
나. 규정 방식 ····· 560
1) 명칭 사용 제한 ····· 560
2) 유사 명칭 사용의 제한 ····· 561
3) 명칭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 ····· 562
15.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563
가. 의의 ····· 563
나. 적용 대상자 ····· 564
다. 적용 대상 벌칙의 범위 ····· 565
라. 규정의 위치 ····· 568

제4장 벌칙 규정 ····· 569

1. 개관 ····· 569
가. 행정벌의 의의 ····· 569
나. 일반적 유의 사항 ····· 570
2. 벌칙의 규정 방식 ····· 570
가. 조 제목과 규정 방식 ····· 570
나. 벌칙의 명령에의 위임 ····· 573
1) 일반적인 유의 사항 ····· 573
2) 위임 기준 ····· 574
가) 처벌법규의 위임 요건 ····· 574

세부목차

나) 불명확한 개념을 토대로 한 위임 금지 ····· 574

3) 위임의 방식 ····· 575

3. 구성요건 ····· 576

가. 의의 ····· 576

나. 명확성의 원칙 ····· 576

1) 의무 규정의 명확성 ····· 576

2) 처벌 대상의 명확성 ····· 577

3) 처벌 대상 위반행위의 명확성 ····· 577

4) 범죄 성립 시기의 명확성 ····· 578

다. 구성요건의 규정 방식 ····· 578

1) 실체 규정에서 일정한 작위·부작위 의무를 과하는 뜻을 규정하고, 벌칙 규정에서는 실체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방식 ····· 578

2)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규정한 다른 실체 규정과 연결하지 않고 벌칙 규정 자체에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방식 ····· 580

3) 가중처벌 규정을 하나의 조문에 규정하는 경우 ····· 580

4) 법령 중 일부가 준용되는 자에 대한 벌칙 적용 ····· 581

4. 법정형 ····· 582

가. 개관 ····· 582

나.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규정 방식 ····· 582

다.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의 규정 방식 ····· 583

라. 벌금의 규정 방식 ····· 584

1) 일반적인 규정 방식 ····· 584

2) 최고액을 정하는 한편 범죄행위의 정도・태양에 따라 벌금액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584
3)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건가격, 용역대금 또는 금전채무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식 ····· 585
마. 징역과 벌금의 선택적 규정 방식 ····· 585
바. 징역과 벌금의 병과 방식 ····· 586
사. 구류・과료의 규정 방식 ····· 587
아. 몰수・추징의 규정 방식 ····· 587
5. 과실범, 미수범, 공범, 형의 감면, 친고죄 등 ····· 589
가. 과실범 ····· 589
나. 미수범 ····· 590
1) 의의 ····· 590
2) 규정 방식 ····· 590
다. 예비・음모 ····· 591
1) 의의 ····· 591
2) 규정 방식 ····· 592
라. 교사・방조 ····· 593
1) 의의 ····· 593
2) 규정 방식 ····· 593
마. 형의 가중・감면 ····· 594
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 595
1) 의의 ····· 595

세부목차

2) 규정 방식 ····· 596

6. 「형법」의 적용 제한 규정 ····· 598

7. 양벌 규정 ····· 599

가. 양벌 규정의 필요성과 적용 대상 형벌 ····· 599

나. 양벌 규정의 규정 방식 ····· 600

1) 일반적인 양벌 규정의 규정 방식 ····· 600

2) 양벌 규정의 적용 대상에 따른 규정 방식 ····· 601

가) 양벌 규정 적용 대상을 특수한 업무 주체로 하는 경우 ····· 601

나) 양벌 규정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는 경우 ····· 601

3) 양벌 규정의 적용 형벌에 따른 규정 방식 ····· 602

가) 벌금형만 규정하는 경우 ····· 602

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규정하는 경우 ····· 602

다) 개별적으로 벌금형을 규정하는 경우 ····· 602

라)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개인과 달리하는 경우 ····· 603

8. 행정질서벌(과태료) ····· 604

가. 행정형벌과의 차이 ····· 604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시행 ····· 604

다. 처분 대상 위반행위 ····· 605

1) 일반 유형 ····· 605

2) 과태료 처분 대상의 예외 ····· 607

라. 과태료 상한액 ····· 607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 608
1) 종전의 규정 방식 ····· 608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후 규정 방식 ····· 608
바. 과태료에 책임주의 원칙 도입 ····· 610
사.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 방식 ····· 611
1) 일반기준 ····· 611
2) 과태료 부과금액 ····· 612
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 방식 ····· 612

제5장 부칙 규정 ····· 615

1. 개관 ····· 615
가. 의의 ····· 615
나. 규정 사항과 규정 순서 ····· 616
1) 일반적인 규정 순서 ····· 616
2) 적용례·특례·경과조치에 관한 부칙 규정의 규정 순서 ····· 616
3) 규정 방식 ····· 617
가) 일반적으로 부칙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한다. ····· 617
나) 개별법의 형식으로 부칙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 ····· 617
다. 유의 사항 ····· 618

2. 시행일에 관한 규정 ····· 619
가. 법령의 시행 ····· 619
나. 시행일 규정의 규정 방식 ····· 619

세부목차

1) 일반적인 규정 방식 ····· 619
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 ····· 619
나)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 620
다) 특정한 날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 621
라)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하는 방식 ····· 621
2) 그 밖의 규정 방식 ····· 621
가)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달리하는 규정 방식 ····· 622
나) 하위법령으로 시행일을 위임하는 방식 ····· 625
다. 시행일을 정할 때의 유의 사항 ····· 627
1) 시행유예기간의 적절한 설정 ····· 627
2) 관련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시행시점의 적절한 선택 ····· 627
3) 법령의 내용에 따라 논리적으로 시행 시점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 ·· 628
4) 공포 후 시행 전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시행 혼란 방지 ····· 628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 629
가. 유효기간 규정의 필요성 ····· 629
나. 유효기간의 규정 방식 ····· 629
1) 법령 전체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방식 ····· 629
2) 특정 조항에 대한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방식 ····· 630
3) 하위법령에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문제 ····· 632
다.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규정 방식 ····· 632
라. 유효기간 종료 후 남은 문제의 처리를 위한 경과규정 ····· 633
1) 한시법 시행 중에 행한 처분 또는 벌칙에 대한 경과규정 ····· 633

2) 한시법 실효 후 남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과규정 ····· 634
마. '규제의 존속기한'에 대한 문제 ····· 635
4. 다른 법령을 폐지하는 규정 ····· 637
가. 다른 법령을 폐지하는 규정의 필요성 ····· 637
나. 규정 방식 ····· 637
다. 법령의 폐지에 따른 사전 준비 및 경과규정 ····· 638
5.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 640
가. 사전 준비행위 규정의 필요성 ····· 640
나. 사전 준비행위의 규정 방식 ····· 641
1)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641
2) 특수법인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 642
가) 정관의 작성 ····· 643
나) 임원의 선임에 관한 문제 ····· 644
다) 설립비용의 처리 문제 ····· 645
다. 사전 준비행위를 규정할 때 유의 사항 ····· 645
6. 적용례에 관한 규정 ····· 646
가. 의의 및 필요성 ····· 646
나. 법령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관한 기준과 부칙 필요성 ····· 647
다. 적용례와 경과조치의 구별 ····· 648
라. 규정 순서 ····· 649
마. 규정 방식 ····· 651

세부목차

1) 일반적인 규정 방식 ····· 651

2)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방식 ····· 652

가) 일반적인 경우 ····· 652

나)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 652

3)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의 규정 방식 ····· 654

4) 위반횟수별 가중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등의 규정 방식 ····· 655

바. 유의 사항 ····· 656

1) 소급적용의 문제 ····· 656

2) 적용시점(始點)을 일정 시점(時點)으로 정하는 문제 ····· 657

7. 특례에 관한 규정 ····· 657

가. 의의 ····· 657

나. 특례와 적용례·경과조치의 구별 ····· 657

다. 규정 방식 ····· 659

라. 유의 사항 ····· 661

1) 부칙의 특례와 본칙의 특례 ····· 661

2) 본칙에 대한 예외표시 등 ····· 662

8.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 663

가. 의의 및 필요성 ····· 663

나. 규정 순서 ····· 664

다. 규정 방식 ····· 664

1) 법령이 개정된 경우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사물)에 대해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 ····· 664

2) 기득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존중·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 ····· 666
가) 인허가 제도의 신설·변경·폐지 ····· 666
① 인허가 제도의 신설 ····· 666
② 인허가 제도의 내용 변경 ····· 669
③ 인허가 제도의 폐지 ····· 671
나) 자격요건의 변경 ····· 672
다) 결격사유의 신설·강화 ····· 674
3) 처분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675
가) 권한이 이관되는 경우 ····· 675
나) 권한이 위임(위탁)되는 경우 ····· 677
다) 권한이 이양되는 경우 ····· 677
4) 행정기관이 개편되는 경우 필요한 경과조치 ····· 679
가) 사무의 이관 ····· 679
나) 직원의 승계 ····· 681
다) 정무직에 관한 문제 ····· 682
라) 법규명령의 정리 문제 ····· 683
마)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 684
바) 예산의 이체에 관한 문제 ····· 684
5) 회계법규의 개정으로 소관회계가 달라지는 경우의 경과조치 ····· 685
6) 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 686
가)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686
나) 위원회의 소관 사무 또는 기능이 변경되는 경우 ····· 686

세부목차

다) 민간위원이나 여성위원의 비율 등 위원회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 687

라) 위원, 임원의 임기가 신설・변경되거나 연임제한이 신설되는 경우 ····· 688

7) 특수법인의 설립・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 690

가) 기존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조치 ····· 690

나) 특수법인 전환 시 필요한 경과조치 ····· 694

8) 제재처분으로서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 696

가) 제재처분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경우 ····· 697

나) 제재처분 기준의 강화 및 완화가 혼재된 경우 ····· 698

다) 제재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 698

9) 서식・복제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698

가) 서식의 경우 ····· 699

나) 복제의 경우 ····· 700

다) 안전표지나 신호등의 경우 ····· 701

10)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701

가) 개관 ····· 701

나) 벌칙을 신설하는 경우 ····· 703

다) 벌칙을 폐지하는 경우 ····· 703

라) 벌칙을 변경하는 경우(형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와 형량을 변경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 704

① 형벌의 종류가 중해지거나 형량이 높아지는 경우 ····· 704

② 형벌의 종류가 가벼워지거나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 ····· 704

마)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 705

바) 형벌 규정과 과태료 규정을 모두 변경한 경우 ····· 706

사) 벌칙의 구성요건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경우 ····· 707
11)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707
12) 법령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 709
13) 폐지·제정 또는 전부개정 시의 경과조치 ····· 711
가) 일반적 경과조치 ····· 711
나) 전부개정 시 종전 부칙의 수용 ····· 711
14) 일괄개정 방식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714
15) 입법 유형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715
가) 분법 또는 조문 이관 시의 경과조치 ····· 715
나) 조례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 717
9.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 719
가. 의의 ····· 719
나. 규정 방식 ····· 719
1) 하나의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 ····· 719
2) 두 개 이상의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 ····· 719
3) 유의 사항 ····· 720
가) 부칙에서 개정하지 않고 개정을 위한 단일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 ····· 720
나)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한계를 지켜야 한다. ····· 721
다) 부령의 경우에는 그 발령권자와 소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인용 조문 또는 자구 정리 등 경미한 사항이라도 부령의 부칙에서 다른 부처 소관의 부령을 개정하지 않도록 한다. ····· 722
라) 다른 법령의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공포번호를 명기하여 개정되는 부칙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한다. ····· 722

세부목차

마)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되거나 개정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이 있는지(예: 법령 A의 '다른 법령의 개정' 규정으로 법령 B 제○조가 삭제된 경우, '법령 B 제○조'를 인용하는 내용의 '법령 C 제△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등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다시 다른 법령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 722

바)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에 따른 별도의 경과조치 등 부칙을 두는 경우도 있다. ····· 723

10. 다른 법령과의 관계 ····· 723

가. 의의 ····· 723

나. 규정 방식 ····· 724

1) 인용되는 법령의 제명이 달라진 경우 ····· 724

2) 인용되는 법령의 제명에 변경이 없는 경우 ····· 725

3) 행정기관 등이 개편된 경우 ····· 725

4) 법인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 ····· 726

다. 유의 사항 ····· 726

제3편 법령의 체제와 개정 · 폐지 방식 ——— 729

제1장 법령의 체제 ····· 731

1. 법령의 제명 ····· 731

가. 법령 제명의 결정 원칙과 표현 방식 ····· 731

나. 법령 형식에 따른 제명 구분 ····· 732

다. 법령 내용에 따른 제명 구분 ····· 732

2. 제명 · 본칙 · 부칙과 장 · 절의 구분 ····· 733
가. 제명 · 본칙 · 부칙의 구분 ····· 733
나. 장 · 절의 구분 ····· 734
다. 총칙과 통칙의 구분 ····· 734
3. 법령 조항과 별표 · 서식 ····· 734
가. 조 · 항 · 호 · 목 ····· 734
나. 법령 조문의 제목 표시 ····· 736
다. 법령 조문의 내용 표시 ····· 737
라. 법령 조항 인용의 표시 ····· 737
1) 해당 법령을 인용할 경우 ····· 737
2) 다른 법령을 인용할 경우 ····· 737
3) 해당 법령과 다른 법령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 ····· 738
4) 부칙 규정에서의 조문 인용 ····· 738
5)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할 경우 ····· 738
6) 조항에 나열된 각 호 중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의 표현방식 ····· 739
가) 그 인용 대상 전부를 지칭하는 경우 ····· 739
나) 그 인용 대상의 하나를 지칭하는 경우 ····· 739
마. 별표나 별지 서식의 사용 방법 ····· 740
1) 별표나 별지 서식의 표기 방법 ····· 740
2) 별표상의 기호표시 방식 ····· 740
가) 규정 내용을 세로로 열거하는 경우 ····· 740
나) 규정 내용을 도표로써 가로로 열거하는 경우 ····· 741

세부목차

제2장 법령의 개정 방식과 폐지 방식 ····· 742

1. 개정 방식의 유형과 기준 ····· 742

가. 개정 방식의 기본 원칙 ····· 742

나.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의 선택 ····· 742

다. 전부개정과 폐지·제정 방식의 선택 ····· 743

2. 일부개정 방식 ····· 743

가. 일반적인 유의 사항 ····· 743

나. 개정법령의 유형 표시와 제명 ····· 744

1) 유형 표시 ····· 744

2) 법령 제명 ····· 744

다. 개정지시문 ····· 745

라. 개정 부분의 인용 ····· 745

1) 개정 부분의 최소단위 지정 ····· 745

가) 최소단위 지정 ····· 745

나) 인용 시의 띄어쓰기 ····· 746

2) 개정될 자구 인용기준 ····· 746

3) 둘 이상의 항이 있는 조문에서 하나의 항만 남아 있는 경우의 인용 ····· 747

마. 개정문의 작성기준 ····· 748

1) 작성 순서와 표현 방식 ····· 748

2) 개정문의 조 단위 작성 원칙 ····· 749

3) 개정문의 조 단위 작성 예외 ····· 749

4) 개정문의 연결 ····· 750

바. 제명과 조・항・호의 개정 방식 ····· 751
1) 제명의 개정 ····· 751
2) 조・항・호 등의 일부개정 방식 ····· 751
가) 조문의 제목을 개정하는 방식 ····· 751
나) 기존의 조・항・호 중 일부 자구를 개정하는 방식 ····· 751
(1) 개정할 부분이 하나인 경우 ····· 751
(2) 개정할 부분이 둘 이상인 경우 ····· 752
(3) 항・호를 달리하여 개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 ····· 752
(4) 하나의 조 안에서 같은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 752
(5) 조(항)에 각 호가 있는 경우 각 호 외의 부분을 개정하는 경우 ····· 753
(6) 각 호 외의 부분이 본문・단서, 전단・후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753
3) 조・항・호 등의 +방식 ····· 753
가) 항이 없는 조에서 제2항 이하를 신설하는 방식 ····· 753
(1) 현행 조문을 개정하지 않고 항 등을 신설하는 경우 ····· 753
(2) 현행 조문의 일부분을 개정하면서 제2항을 신설하는 경우 ····· 753
나) 각 호가 없는 조・항에 각 호를 신설하는 방식 ····· 754
다) 조・항・호에 단서 또는 후단을 신설하는 방식 ····· 754
라) 기존의 조・항・호의 맨 끝부분에 조・항・호를 신설하는 방식
(5개의 조・항 또는 호가 있는 법령을 예로 함) ····· 754
마) 기존의 조・항・호 사이에 조・항・호를 신설하는 방식 ····· 755
(1) 개정 방식 ····· 755
(2) 현행 조항의 이동 방식 ····· 755

세부목차

(3) 가지번호 방식 ····· 756

(4) 추가되는 조가 장・절 등의 경계에 들어가는 경우의 개정 방식 ····· 757

4) 조・항・호 등의 전부개정 방식 ····· 758

5) 조・항・호 등의 삭제 방식 ····· 759

6) 조・항・호의 복합적 개정 방식 ····· 760

가) 어느 조를 세 개 조로 나누는 경우 ····· 760

나)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조문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 760

다) 두 개 항으로 이루어진 조의 각 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제2항을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경우 ····· 761

라) 세 개 이상의 항으로 된 조의 각 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제1항과 제2항의 항 번호는 그대로 두되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제3항을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와 같이 개정문이 복잡할 때에는, 개정문을 적절히 끊는 방식을 사용한다. ····· 761

마) 두 개 항으로 된 조에서 제2항을 전부개정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새로운 제2항과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 762

바) 두 개 항으로 된 조에서 하나의 항을 삭제해 하나의 항만 남게 되는 경우 ·· 762

사) 제○조가 다섯 개 호로 되어 있을 때 제3호를 전부개정하고 제4호와 제5호를 한 호씩 끌어내리고 제4호를 추가하는 경우의 개정 방식 ····· 763

아) 어느 조(항)의 각 호를 전부개정하면서 각 호의 수가 변경된 경우 ····· 763

자) 조(항)의 중간에 있는 어느 항(호)을 삭제하고, 다른 항(호)을 이동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식을 사용한다. ····· 764

7) 특수한 개정 방식 ····· 764

가) 조로 되어 있지 않은 법령에 조를 추가하는 개정 방식 ····· 764

나) 조・항・호의 순서를 맞바꾸어 개정하는 방식 ····· 764
사. 장・절 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 방식 ····· 765
1) 장・절 등의 제목을 개정하는 방식 ····· 765
2) 장・절 등을 추가하는 방식 ····· 765
3) 장・절 등을 전부개정하는 방식 ····· 766
4) 장・절 등을 삭제하는 개정 방식 ····· 766
5) 기존의 조문에는 변동 없이 장・절의 제목만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식 ·· 767
가) 장・절의 제목을 추가하는 경우 ····· 767
나) 장・절의 제목을 삭제하는 경우 ····· 767
아. 부칙 개정 방식 ····· 767
1) 기존 법령의 부칙 개정 ····· 767
2) 개정 방식 ····· 767
3) 두 개 조로 된 부칙(또는 본칙) 중 제2조를 삭제하는 개정 방식 ····· 768
4) 부칙과 별표(또는 별지 서식)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 ····· 768
5) 기존 법령의 부칙을 재개정하는 방식 ····· 768
자. 표와 서식의 개정 방식 ····· 769
1) 일반적인 유의 사항 ····· 769
2) 별표의 일부개정 방식 ····· 770
3) 별표의 전부개정 방식 ····· 772
4) 별표를 별표 둘로 하는 개정 방식 ····· 773
5) 별표 둘을 별표 하나로 통합하는 개정 방식 ····· 773
6) 서식의 개정 방식 ····· 773

세부목차

3. 전부개정 방식 ····· 774

가. 개정법령의 제명 ····· 774

나. 전부개정법령안의 형식 ····· 775

다. 제정법령안의 형식 ····· 775

4.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개정문 작성 방식 ····· 776

가. 공포 후 시행 전 조문 개정의 의의 ····· 776

나.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판단기준 ····· 776

다. 공포 후 시행 전 조문 개정 시 일반적인 작성 방법 ····· 777

1) 공포 후 시행 전 조문만 개정하는 경우 ····· 777

2) 현행 조문과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함께 개정하는 경우 ····· 777

라. 시행일에 따른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개정 방식 ····· 780

1) 개정 조문의 시행일이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시행일과 같은 경우 ····· 780

2) 개정 조문의 시행일을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시행일보다 빠르게 해야 하는 경우 ····· 781

3) 개정하고 있는 법률의 시행일이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시행일보다 더 늦게 오는 것이 분명한 경우 ····· 783

5. 관련성 있는 법령을 함께 개정하는 방식 ····· 784

가. 필요성 ····· 784

나. 개정 방식 ····· 787

다. 법령 제명 ····· 787

라. 개정문 표현 방법 ····· 787

마. 개정 한계 ····· 789

1) 개정법령 간의 관련성 ····· 789
가) 부칙 개정 방식에 의하는 경우 ····· 789
나) 본칙 개정 방식에 의하는 경우 ····· 790
2) 개정법령 종류의 동질성 ····· 790
6. 공동부령의 개정 방식 ····· 790
가. 공동부령의 형식 ····· 790
나. 공동부령의 개정 방식 ····· 791
7. 폐지 방식 ····· 792
가. 폐지 방식의 유형 ····· 792
나. 폐지 방식의 유형에 따른 규정례 ····· 792
1) 부칙에서 폐지하는 방식 ····· 792
2) 폐지 법령의 형식 ····· 793
제3장 법령 용어와 표현 ····· 794
1. 법령 용어의 통일적 사용 ····· 794
가. 간주한다/본다/추정한다 ····· 794
나. 소멸시효/제척기간 ····· 795
다. 협의/합의/승인/동의 ····· 796
라. 기일/기한/기간 ····· 796
마. 즉시/지체 없이 ····· 797
바. 한다/하여야 한다 ····· 797
사. “제○조에 따른 ~”과 “제○조의 ~” ····· 797

세부목차

2. 약칭 사용 ····· 799

가. 약칭의 의의 ····· 799

나. 약칭의 위치 ····· 799

다. 하위법령의 약칭 ····· 800

라. 약칭 사용의 제한 ····· 800

마. 약칭 사용의 정도와 방법 ····· 801

바. 다수 용어 약칭과 일부 용어 설명 ····· 802

3. 준용(準用) ····· 803

가. 준용의 의의 ····· 803

나. 준용문의 규정 방식 ····· 804

1) 기본 규정 방식 ····· 804

2) 준용 규정의 인용 ····· 805

3) 의무규정의 준용 시 과태료 등의 부과 권한 주체 ····· 806

4) 준용에 따른 벌칙・과태료 등의 규정 ····· 807

5) 법률 규정 간 준용에 따른 하위법령 규정 간의 준용 ····· 809

다. 준용과 구별해야 할 표현 ····· 811

라. 준용 규정 시 유의 사항 ····· 811